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1. 3. 16.>

환경보전시설(제12조제2항제3호 관련)

구분	적용범위
1.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·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	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,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나. 「악취방지법」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다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무공해자동차나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
2. 소음·진동방지시설 및 방음시설, 방진시설	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소음·진동방지시설, 방음시설, 방진시설
3. 가축분뇨처리시설	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처리시설
4. 오수처리시설	「하수도법 시행령」에 따른 오수처리시설
5. 수질오염방지시설	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
6.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	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
7. 건설폐기물처리시설	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
8. 재활용시설	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활용시설
9.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·장비·자재	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오염방지·오염물질 처리시설 및 방제시설
10. 탈황시설	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에 따른 석유 속에 함유된 황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설(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·분해·정제 과정을 통해 휘발유·등유 또는 경유를 생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)
11. 토양오염방지시설	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(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권장 설치·유지·관

	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)
12. 청정생산시설	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(투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)
13. 온실가스 감축시설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 가. 이산화탄소(CO ₂) 저장, 수송, 전환 및 포집기술 나. 메탄(CH ₄) 포집, 정제 및 활용기술 다. 아산화질소(N ₂ O) 재사용 및 분해기술 라. 불소화합물(HFCs, PFCs, SF ₆) 처리,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

비고: 각 호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및 공해물질의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을 포함한다.